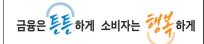


보도참고



보도	배포시	배포	2023.8.2.(수)		
담당 부서	은행검사2국 검사기획팀 검사2팀	책임자	국 장	백규정	(02-3145-7200)
		담당자	팀 장	박진호	(02-3145-7205)
			팀 장	정재승	(02-3145-7225)

금감원, 경남은행 횡령사고 현장검사 착수

- 주요 내용 -

- ◈ 금융감독원(원장 이복현)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(7.21일)하여 8.1일 현재 사고자(투자금융부서 직원)의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
- ◆ 금융감독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며
 - 향후 검사결과, 위법·부당사항 및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과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

1 검사 배경

- □ 금감원은 '23.7.20.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(이하 '사고자')에 대한 자체감사*에서 인지한 **PF대출 상환자금(77.9억원) 횡령 혐의**를 보고해 옴에 따라
 - * 경남은행은 사고자의 본건 外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(6.21일) → 이에 금감원은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
 - '23.7.21.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하였으며, '23.8.1. 현재 사고자의 횡령·
 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하였음(총 사고규모(잠정) 562억원)
 - ※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사고자를 검찰에 고소하였음

2 사고 개요

※ 8.1일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서 향후 검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- □ 사고자는 '07.12월~'23.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·유용한 혐의가 있음
 - ① ('16.8월~'17.10월) 사고자는 이미 부실화된 PF대출(1건, 169억원) 에서 **수시 상환**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.9억원을 횡령*
 - * '18.2월 사고자가 횡령금(77.9억원) 중 29.1억원을 상환처리(횡령을 은폐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)하여 미회수 금액은 48.8억원
 - ② ('21.7월 및 '22.7월) 사고자는 차주(PF 시행사)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하여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(1건, 700억원 한도약정)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
 - ③ ('22.5월)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 하지 않고,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*
 - * 금감원은 사고자가 관리하였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

3 향후 계획

- □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(서울 소재)에 검사반을 투입 하여 **사고 경위** 및 **추가 횡령사고 여부***를 **파악**하고 있으며
 - * 사고자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하여 경남은행의 PF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

-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**내부통제 실패**에 기인했을 **가능성**이 있는 만큼
 - 경남은행 본점(창원 소재)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(7.31일)*하여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음
 * (최초) 1개반 4명 → (확대) 2개반 12명
 -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,
 - 사고자는 **약 15년간 동일 업무**를 담당하면서 **가족 명의 계좌**로 대출(상환) 자금을 **임의 이체**하거나 **대출서류**를 **위조**하는 등 **전형적**인 **횡령 수법**을 동원한 것으로
 - 은행의 특정 부서 **장기근무자**에 대한 **순환인사 원칙 배제**, **고위험업무에** 대한 **직무 미분리**, 거액 입출금 등 **중요 사항 점검 미흡** 등 **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**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
- □ 금감원은 최대한 **신속**하게 **검사**를 진행하여 **정확한 사실관계**와 **사고발생 경위** 등을 **파악**하고,
 -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·부당사항에 대해서는 '무관용 원칙'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
- □ 특히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**사고예방**을 위한 **내부통제**를 **개선**토록 **지속적**으로 **지도·감독*** 및 **제도개선을 강화**해왔던 만큼
 - * 금감원은 '22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 발생 직후 全 은행에 자금관리체계 등 자체 점검을 요청('22.5.2.)한 바 있음
 - 본건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**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** 있는 **관련**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임

[☞]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